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60 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전현희·한준호·박균택

이정문 • 김승원 • 윤종군

박홍배 · 김민석 · 조승래

김영환 · 황정아 · 이기헌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,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, 언론·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, 고소·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·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(또는 단체)가 정치적,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,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70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3항 중 "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"를 "고소가 있어야"로, "없다"를 "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70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승)
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<u>피해</u>	③ <u>고소</u>
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	<u>가 있어야</u>
<u>반하여</u> 공소를 제기할 수 <u>없다</u> .	있다.